

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I. 목적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주)에스에프에이넥셀(이하 '당사')의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 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협력회사 선정·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회사 선정 및 협력회사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외주협력회사 등록 및 평가업무 지침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2. 협력회사 선정 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가. 협력회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회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시 공지한다.
- (2) 협력회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3) 협력회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회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회사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대상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② 해당 거래에 대한 생산, 제조 경험(보유기술 등 전문성)
 - ③ 해당 거래와 관련된 인력 및 설비보유 여부
 - ④ 기타 경영자의 마인드 및 사업영위 기간
- (2) 퇴직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및 현직, 퇴직임직원 혹은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현직 및 퇴직 임직원 혹은 그의 특수관계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인 경우 선정을 위한 별도 기준을 운영한다.
- (3)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는 상시 운영한다.
- (4)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5)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회사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

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마.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당사는 협력회사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상시 공개한다.

바.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사.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회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부도, 채권압류, 파산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⑥ 하도급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회사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③ 협력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아.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한다.

Ⅲ. 부칙

이 실천사항은 '18. 5월 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개정. '18. 12. 31)